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도시 발전과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토론회

2019. 7. 10.(수) 14:00~16:00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이경우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와 부산광역시가 인권도시의 발전과 인권의 지역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권은 지역에서 시작하여 지역에서 완성됩니다. 지역은 인간의 삶이 펼쳐지는 직접적인 공간이며, 인권문제 발생의 시작점이자 궁극적 해결지점이기도 합니다. UN 인권이사회는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키고, 2015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지방정부와 인권, 인권도시’의 개념을 유엔의 공식적인 의제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조례 제정, 지방인권기구와 인권전담부서 설치를 권고하고, 지자체의 인권증진 사업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등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여러 지자체는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권영향평가, 인권모니터링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인권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 즉 ‘인권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행정은 행정의 최고목적을 주권자인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두고, 모든 행정과정에 인권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국가와 함께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사회복지, 교육 등과 같은 모든 행정분야에 있어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합하도록 '행정의 인권화'를 지향해야 인권의 지역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자체, 인권위,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다양한 인권정책 개발, 내실있는 인권제도의 구축과 운영, 공직자 및 시민대상 인권교육 등을 통해 인권의 지역적 실현이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의 민주적 참여와 소통이 인권 거버넌스를 이루는 기본 토대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을 품은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이 경 우**

프로그램

Program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부산광역시
- 일시 : 2019. 7. 10.(수) 14:00~16:00
- 장소 :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시 간	내 용
14:00~14:05	❖ 개회선언
14:05~14:10	❖ 인사말 - 이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장내정리 5분)	좌장 : 이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14:15~14:45 (30분)	[기조발제] 거버넌스 실현으로서의 인권도시 - “왜 인권도시인가?” - 김종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4:45~15:10 (25분)	[발제] 세계 인권도시 운동의 흐름과 한국에서의 함의 - 진주 前 광주 광산구 인권팀장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상임연구원)
15:10~15:25 (15분)	[발표 1] 지역사회 인권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시민참여 활성화 -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15:25~15:40 (15분)	[발표 2]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의 협력 방향 - 박유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주무관
15:40~16:00 (20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00	폐 회

- [기조발제]
 - 거버넌스 실현으로서의 인권도시 - “왜 인권도시인가?” 1
 김종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제]
 - 세계 인권도시 운동의 흐름과 한국에서의 함의 17
 진주 前 광주 광산구 인권팀장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

- [발표 1]
 - 지역사회 인권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시민참여 활성화 27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 [발표 2]
 -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의 협력 방향 43
 박유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주무관

- [부 록]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49
 -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58
 -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63



인권도시 발전과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토론회

[기조발제]

거버넌스 실현으로서의 인권도시 - “왜 인권도시인가?”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거버넌스 실현으로서의 인권도시 - “왜 인권도시인가?”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부산은 어떤 도시인가?

- **다이나믹 부산**

‘해양도시’ -> ‘동북아 해양수도’

‘민주화의 성지’

‘인권도시’ ?

- **도시의 정체성** - 구성원들의 인지, 비전

인권도시란?

- **인권 + 도시**

- **도시** - 사람들의 삶의 현장,

- **물리적 환경**

- 인구, 산업 구조, 자연 환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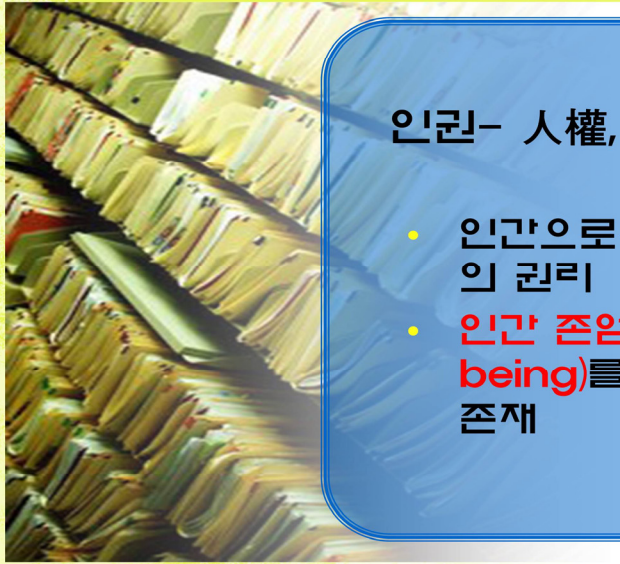
- **문화적 토양**

- 생활 방식, 문화 활동 내용 등

- **사회적 관계, 규범, 가치**

-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는 규범, 관습, 가치

인권이란?



인권- 人權, human rights

- 인간으로서 갖는 사람(인간)의 권리
- **인간 존엄과 안녕 복리(well-being)**를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

인권의 성격

- 인권 인식의 저변에는 **인간관** 반영
- **인간 존엄**에 대한 인간관 기초
⇒ 인권의 보편성(모든 인간에게 적용, 영향)
 - 종교적 관점
 - 윤리적 관점
 - 철학적 관점

인권 실행

- 인권 보장은 사회적 영역
- **인권은 사회관 반영**
 - 사회적 약속, 사회에 대한 인식, 사회 연대
- 인권 내용과 보장
 - ⇒ 헌법, 법률 등에 규정
 - ⇒ 인권 침해의 사법적 판단

헌법과 법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헌법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제정, 2008년 시행)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인권 실행의 성격

- **인권** - 법 이외의 영역 존재
- **차별의 사회적 요인**
 - 인식, 관습, 권력 관계,
 - =>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인 작용
- **인권보장체제 구축 필요**
 - 국제 사회
 - 국가 차원

세계인권선언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인류 사회의 약속

“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 ”

-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에서

* **인권의 보편성** 확인 *

국제 인권 협약의 발전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사회권 협약, 1966채택, 1976 발효)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자유권 협약, 1966채택, 1976 발효)
- 인종차별범죄금지협약(1973)
-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 고문방지협약(1984)
- **어린이 청소년 권리 협약(1989)**

국제 사회의 인권 발전

- 유엔 창립 (1945) - 유엔헌장 채택
- **세계인권선언 (1948)**
- 리우 환경회의 (1992)
-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993)**
- 카이로 인구개발회의 (1994)
-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1995)
-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1995)
- 남아공 더반 인종차별철폐회의 (2001)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선언 (1993)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서로 의존하여 관련되어 있다. 국제 사회는 인권을 전세계적으로 공정하며 동등한 양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국가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계와 관계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와 인권

- 국가의 인권 침해 역사
-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들의 공공 복리 **‘편히 잘 산다는 것’ (well-being)**
- **국가의 책임이며 의무** : 국민의 안위를 지켜주고 잘 살게 해주는 것
- 현대 국가의 최대 관심사이자 과제
→ **자국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 국가인권위원회 발족(2001)

인권 현실은...

매 맞는 아내,
 폭력에 멍드는 어린이,
 따돌림에 고통 받는 학생,
 굶주린 독거노인,
 차별 받는 다문화가정 주부와 자녀,
 막힌 길에 좌절하는 장애인,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여성,
 편견의 일상을 겪는 성적 소수자,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한 대우로 억눌린 외국인 노동자,
 안전 사고, 갑질, 데이트 폭력, 밤길 위험.....”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
 ↓
 인권의 지역화 절실

인권 증진 방안은?

- 인권은 침해 이전에 예방을.
- 인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처, 구제
- 인권 존중의 지역이라면?
- 인권에 기반한 지역사회를 만든다면?
- 인식의 전환 필요

인권의 지역화

- 인권은 전지구적 기준(global standards)
- 인권보장체제(HR regime) 구축
국제 인권협약 채택과 발효
- 국가적 인권 약속
 - 헌법, 법률, 국가기구의 활동 기준 등
-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실현 필요.

인권도시 만들기

- 인권 존중 받는 지역 공동체 만들기
- 생활 방식, 가치, 규범, 관습, 사회 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기
- 다른 사람의 인권 이해와 책무 가지기
- 인권을 지방 행정의 중심에 두기
(인권에 기초한 정책 수립과 실행하기)
- 인권 문화와 제도화 확산하기

‘인권도시’, 인권 존중 받는 도시만들기

- **현실**에 대한 진단
- **미래 설계(vision)**의 기초
- **미래를 향한 현재의 활동 방향**

도시에서의 인권 인식

- ‘**도시에 대한 권리**’
 - 주민의 기본 권리 인식
(시혜와 권리의 차이 인식 필요)
- 그 내용은 무엇인가?
- **인간의 기본 권리를 뛰어넘어 도시 주민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인식
- **자유권**(시민적, 정치적, 참여 권리 등)
사회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 **도시의 특성** - 거주권, 환경권 등,

인권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 **범사회적 협력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 **지역 기관 및 단체**(교육기관, 언론기관, 종교기관, 인권단체, 시민단체, 기업, 동호인 등)의 역할은?
- **시민**(당사자, 개인 등)의 역할은?

거버넌스 실현으로서의 인권도시

- **거버넌스의 개념**
=> **협치**(協治), **공치**(公治, 共治)
- **구성원의 역할 존재, 참여 필요**
=> **참여 보장 체제 구축**
- **거버넌스 실현은 인권도시 만들기의 효과적 방안**

인권 행정을 향하여

- **인권 주류화** => 인권에 기반한 행정
- 인권조례 제정, 인권증진기본계획 등 필요
- 단독으로 실현?
- 현실적으로 어려움. 바람직하지도 않고.
- **인권도시 만들기**는 **구성원(지자체, 시민단체, 당사자를 비롯한 시민 등) 모두의 책임**
- **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성과 기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인권도시 인식 공유**
 - 인권선언, 인권헌장, 인권행정 강령
- **인권실행 확산 및 점검**
 - 인권교육, 인권실태 모니터링, 인권영향평가 등
- **인권실행 제도 구축**
 - 인권조례 제정, 인권담당부서 설치, 인권위원회 구성과 운용, 인권보호관 운용 등

우리 사회를 **인권공동체**로!!

인권을
존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차별 없고,
폭력 없고,
배고픔 없는
공동체로

감사합니다.



인권도시 발전과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토론회

[발제]

세계 인권도시 운동의 흐름과 한국에서의 함의

진주

前 광주 광산구 인권팀장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

세계 인권도시 운동의 흐름과 한국에서의 함의

진주 前 광주 광산구 인권팀장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상임연구원)*

I. 세계의 인권도시

1. 남미와 유럽의 인권도시

1) 최초의 인권도시 아르헨티나 로사리오(Rosario)

- 배경: 인권도시 시민운동을 벌여온 PDHRE¹⁾이 1997년 최초로 ‘인권도시’임을 지정함
- 특징
 -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정권 시절 시민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살해·실종되었으며,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인권단체를 조직, 진실규명 투쟁을 벌여옴(자유권).
 - 로사리오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소수민족 차별)
 - 이후 시민의 안전, 주거복지 문제 등으로 확대(사회권)
- 주체: 시정부, 시민단체, 원주민단체
- 주요 정책
 - 인권교육: 교사, 학생, 경찰, 언론, 법조계 종사자, 여성, 원주민대상으로 실시, 특히 경찰의 폭력과 차별이 문제였기에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이 역점

* 2015~2018년까지 광산구청 인권팀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에서 농민권리 (“유엔농민과농어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2018년 12월 채택)에 관해 연구 활동 중이다.
 1) 1988년 설립된 ‘인권교육을 위한 민중운동’이라는 비정부기구의 인권도시 활동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가 1997년 최초로 인권도시로 선포되었고, 이후 확산되었음(The People’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시민의 참여 및 역량 강화: 시민참여예산제, 인권에 기반한 정책기획 및 평가(인권영향평가)
- 범죄 퇴치, 원주민 보호, 이주민들의 주거 문제²⁾

2) 바르셀로나

- 배경: 스페인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과 자치권 확보 투쟁을 벌여온 카탈루냐 지역의 중심 도시. 1930년대 내전 당시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싸운 거점 도시로 수많은 시민이 학살당함.
- 특징
 - 이주민에 대한 차별 금지, 종교적 갈등 완화를 위한 인권 정책
 - 유럽 인권도시헌장³⁾ 채택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 1998년 제1회 유럽인권도시회의 개최 이후 2000년 헌장이 채택되면서 헌장을 비준한 첫 번째 도시.
 - 핵심 개념: 도시권, 인권에 기반한 접근, 다문화존중 관점, 페미니즘
- 주체: 시정부, 시민사회
- 주요 정책
 - 인권교육: 시공무원 인권교육, 2년 동안 2천여 명의 공무원이 최소 8시간 인권교육 이수
 - 정책적 관점: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인권이 있다 또는 권리주체이다/ 공공기관(지방정부)은 법규준수 및 발전과 관련하여 법적·도덕적 의무를 가진다 또는 의무주체이다 / 기업, 대학, 시민사회(비정부기구), 언론 등 사회 행위자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인권을 이행하는 책임도 있다, 따라서 책임 주체이다.
 - 공공 정책의 전환: 필요에 따라 부족한 자원을 분배하는 것 → 공공서비스 접근, 분권화, 지역민주주의, 성평등, 이주, 문화·사회적 참여 등등.
 - 정책적 목표: ① 공공정책에 인권을 실현하기 ② 구체적인 인권정책을 실행하기
 - 정책이행 방법: ① 공무원 교육(횡단적, 종단적, 여러부문을 아우르는 공공 정책에 관한 지식과 기술 향상) ② 문제 파악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공정책을 수

2) 아르헨티나 내에서 로자리오는 이주민들이 가장 많은 도시임

3) European Charter for Safeguarding Human Rights in the City

- 립하는 전 과정에 폭넓은 참여 필요 ③ 제도의 변화와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을 존중, 보호, 보장하는 변화를 공공행위 내에서 수용하기 ④ 사회불평등과 권력 관계의 근원을 찾아내는 인권에 기반한 지표(indicators) 필요
- 주요 정책 ① 인권존중: 행정에서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정책(유럽인권도시헌장), ② 인권보호: 인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만드는 정책(이슬람혐오를 반대하는 지방정부[기초자치단체]의 정책) ③ 인권이행/보장: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행정이 구제하는 정책(반차별국)

3) 오스트리아 그라츠

- 배경: 히틀러 나치 집권 시절 나치 이데올로기 확산의 중심도시로 유대인에 대한 탄압과 추방을 선도했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자기성찰로부터 출발
- 특징
 - 유럽 최초의 인권도시로 선언. ‘난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 1999년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 연구 센터 설립⁴⁾: 그라츠 대학과 협력
- 주체: 행정, 시의회, 대학, 시민사회
- 정책
 - 2001년 그라츠 시의회 ‘인권도시선언’⁵⁾
 - 인권자문위원회의, 이주민위원회, 종교위원회, 사회통합부서, 평화센터, 차별금지기구 등 설립

4) 인권, 인권교육, 지역차원의 인권, 반인종주의 및 반차별, 민주주의, 법치, 좋은 거버넌스, 유럽남동부와 안보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음. 인권교육은 교사, 사법부, 경찰, 공무원, 보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 인권도시를 실현하고 인종차별반대 유럽도시연합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시정부 및 시장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활동하며 그라츠 인권이사회 행정사무실이 센터 내에 있음. 인권이해 매뉴얼, 연구물, 온라인 간행물 Human Security Perspectives, 유럽인권연간보고서(공동편집) 등 여러 활동 진행.

5) …it should be ensured that human right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guidelines and decis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city of Graz. With this declaration and the associated intentions and instructions for action, the city of Graz, as European Capital of Culture 2003, also expresses its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human dignity.“ 그라츠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침과 결정에 있어 인권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도시선언과 선언의 이행을 위한 의도 및 지침과 더불어, 2003년 유럽의 문화수도인 그라츠는 문화와 인간의 존엄성 또한 잘 이해하고 있다.

- 매년 인권보고서 발행, 반차별페스티벌, 인권도시투어
- 2006년 인종차별반대 유럽도시연합 가입, 2012년 남녀평등을 위한 유럽 헌장 가입

4) 독일 뉘른베르크

- 배경: 나치의 중심 도시-비인도적 인종차별법 제정, 나치 전범 재판-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 부끄러운 역사를 공개적으로 논하고 기억하며,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성찰.
- 특징: 독일에서 인권을 가장 옹호하는 도시. 이주민 비율이 높아 인종 간 불평등과 집단적 괴롭힘 및 차별 대우가 발생함에 따라 인종 차별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정책
 - ① 시장실과 밀접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담당관실 구성, 지방정부 모든 정책에 인권을 실천하는 업무(교육, 문화, 주거, 노동 분야)
 - ② 차별대우 금지
 - 평등법(2006) 제정, 차별금지담당관 신설(2011, 상담·중재 업무)
 - 비즈니스분야 차별금지 규정(음식점, 클럽, 주류업 등 차별 금지)
 - 부동산 분야 차별 금지활동(2010): 임차인, 구매자, 세입자 등에 대한 차별 금지
 - 기업의 인권 기여 활동 장려: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보장, 이주민 고용 및 해외 하청업체 강제노동, 아동 노동 금지 등 / '뉘른베르크 차별없는 기업문화상' 개최(2010부터 격년제)
 - ③ 인권문화정책
 - 뉘른베르트 국제인권상 제정, 국제인권회의 개최, 역사기록관 운영
 - 인권의 거리 조성(유대인 건축가)
 - 인종차별 반대 유럽도시연합 주도
 - 2010년 유네스코 인권상 수상
-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인권활동을 위한 인권도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
 - 인권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핵심임을 인지하고 유네스코와 함께 지방정부 인권연합을 발전시킴. 세계 지역의 다양성과 선형 역점들을 고려하여 지역(대

륙)별 연합의 단계적 구축을 제안

- ① 유럽인권도시회의
- ② 유럽인종차별반대도시연합: 7개 대륙별 연합체로 구성. 2004년 뉘른베르크에서 유럽연합 창립. 2011년까지 의장직을 맡았으며 2012년 중반까지 사무국 운영.
- ③ 뉘른베르크 극우익 반대 연합⁶⁾: 뉘른베르크 시는 우익의 극단적 행동이 사회불안을 야기, 평등을 부정하며 타인을 혐오하는 문화를 형성함을 인지, 연합체를 직접 창립. 142개 지방정부, 157개 기관 및 단체 참여. 뉘른베르크시(인권국)가 사무국 운영

2. 미주의 인권도시

1) 캐나다 에드먼턴

- 배경: 신대륙 개척으로 유럽인들이 이주하기 이전의 캐나다 원주민 인권 문제로부터 출발. 원주민에 대한 가해의 역사를 반성 → 이주민의 증가로 다양한 인종과 종교 간의 관용과 포용으로 확대
- 특징: 원주민의 인권보호 집중
- 정책
 - 아시아계와 이슬람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인종과 종교 간의 관용과 포용 정책
 - 성소수자와 노숙자 포용 정책

2) 캐나다 몬트리올

- 배경: 퀘벡 주의 시로 오랫동안 캐나다의 다른 지역과 다른 문화(프랑스어 사용)를 바탕으로 자치권을 요구해 왔음
- 특징: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현장⁷⁾ 제정 (2006)

6) 12가지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제안하고 있음. 예) 협력분야: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공분야: 대중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시민사회의 기여도를 강화할 방법은 무엇인가.
 7) 현장은 원칙과 가치(서문), 1장(민주주의), 2장(경제·사회생활), 3장(문화생활), 4장(여가, 체육 활동), 5장(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6장(안전), 7장(지방정부 서비스), 해석과 이행 등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은 '권리와 책임'과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정책

- 인권옴부즈맨 운영 (2002): 현장에 따라 진정건 조사, 자체 직권 조사 수행,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정보의 비공개 보장
- 감사실에서 권리 침해 조사 → 시의회 보고

3) 미국: 유진, 뉴욕, 워싱턴

○ 배경: 미국의 인권도시들은 독특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기보다는 도시 자체적인 정책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음

○ 정책

- ① 오리건 주의 유진시: 2006년부터 시작, 인권조례 제정, 시 인권위원회 구성, 평등과 다양성 증진 5개년 계획 수립, 공무원 및 시민 대상 인권교육 실시
- ② 뉴욕⁸⁾
 - 뉴욕인권법(New York Human Rights Law): 1945년 차별반대법에서 기원함. 고용, 주거, 공공시설, 차별반대에 대한 보복행위로부터 보호, 차별적 괴롭힘, 법집행자(사법, 경찰 등)로부터 편견에 기반한 업무 수행 등을 다루고 있음
 - 성적지향차별반대법(2002), 성별정체성 차별반대법(2019.1월) 제정
 - 인권조례, 시 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합, 차별금지 활동, 인권교육 활동
 - 시 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지지 표명
- ③ 워싱턴⁹⁾
 - 1977년 워싱턴 인권법(DC Human Rights Act) 제정
 - 인권침해진정조사 및 구제
 - 인권위원회운영, 차별금지, 인권교육
 - 길거리괴롭힘방지법(Street Harassment Prevention Act) 제정

8) <https://www1.nyc.gov/site/cchr/index.page> 참고

9) <https://ohr.dc.gov/> 참고

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권도시

1) 일본¹⁰⁾ 오사카 사카이 시

- 배경: 오사카의 부락민 차별의 역사를 배경으로, 사카이 시정부와 의회는 인권과 평화를 도시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1980년 ‘인권옹호도시선언’ 결의안 채택.
- 특징: 인권과 평화가 도시의 주요 의제로 성장함. 1983년 ‘비핵평화도시선언’ 결의안 채택. 2006년 ‘사카이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 정책
 - 2003년 인권정책 기본 방침 확정, 2005년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실태조사 실시
 - 2008년 ‘자유도시 사카이 평화공헌상’
 - 시정부의 각 과에 인권담당 공무원 배치
 - 인권교육 실시: 소규모 인권담당 공무원 교육(현장학습 참여체험형),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실시, 년1회 교사 대상 인권교육 연수(학교별로 인권담당 교사 배치), 인권교육연구대회(인권실천사례발표) 등
 - 인권프렌드쉽센터: 시립인권교육문화센터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짐
 - 주제별 정책 수립: 부락차별문제(인권부국 설치), 여성(선언, 행동계획수립), 어린이(상담소 설치), 장애인(장기계획) 등

4. 인권도시네트워크

1) 유럽인권도시회의(European Conference Cities for Human Rights): 도시인권보호현장¹¹⁾

- 1998년 바르셀로나에서 창립, 2010년까지 격년으로 회의개최, 400개 도시 참여. 현장 이행에 관한 평가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10)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인권조례제정 운동을 벌여왔음

11) 국가 입법이 요구되는 조항에 관해서는 유보하여 가입할 수 있음(현장 5장)

2) 인종차별반대 도시연합(European Coalition CAR): 인종차별반대 10대 실천계획

- 대륙별 연합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아태지역 연합에 한국의 도시 참여(광주광역시)

3) 도시연합과 지방정부(UCLG) 내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위원회: 도시의 인권에 관한 세계헌장(2011 채택)

- 세계적인 인권도시 네트워크, 주거권, 이주문제 등
-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협력(매년 광주광역시 개최)

II. 한국사회에서 인권도시의 의미

-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살려 ‘인권도시’를 기획
- 인권도시의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구축: 인권도시선언, 조례, 기본계획, 인권위원회 등
-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의 역할: 독립적인 옴부즈맨, 상담 및 조정의 역할 강조
- 시민자치 중심의 인권거버넌스 구축: 지방 행정 중심이 아니라 풀뿌리 시민공동체와 시민사회, 의회 중심의 거버넌스 필요

□ 참고자료

2007, Human Rights Learning and Human Rights Cities (Achievement Report), PDHRE

2012, 『2012 한국인권회의 자료집』, 한국인권재단

2012,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 자료집』,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4, 강현수, 인권도시 만들기, 충남발전연구원

2015, 인권도시정책세션,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8, 인권도시정책세션,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인권도시 발전과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토론회

[발표 1]

지역사회 인권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시민참여 활성화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지역사회 인권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시민참여 활성화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보편적 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인권제도는 국제사회를 넘어 국가 단위로, 그리고 이제는 각 개별국가의 지방정부 단위로 확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연계망을 가지는 ‘인권도시’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종래에는 인권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옴부즈맨과 같은 국가차원의 제도나 기구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행기구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인권제도를 구축하면서 이른바 인권망(human rights network)이 형성되는 추세이다.¹⁾

2017년 제31차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지방정부의 인권보장을 위한 역할과 인권도시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7년 12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가 발족하기도 했다. 2018년 하반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실현책무를 더욱 높여낼 수 있도록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물론 이러한 국내외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인권기본조례」의 확산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예컨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인권교육의 시행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도 허다하다. 주지하다시피 단체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앞서가는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오

1) 정영선,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관련 쟁점과 과제’, 2016 제2회 한국인권회의 자료집, 2016, 134p.

늘도 ‘인권’과의 어색한 만남을 반복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지방자치 인권제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지자체 인권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인권조례와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

1) 인권조례 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인권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속가능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도에는 조례, 인력 또는 조직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의 도입은 2002년 울산광역시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활동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운동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운동이 모색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에는 경남 진주에서도 학계 연구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인권조례 제정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두 번의 실패 끝에 결국 2009년 5월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권조례 제정활동이 본격화된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각 지자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하며 인권제도의 도입을 급격히 확산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다. 2019년 현재 총 104곳의 지방자치단체(광역시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87곳)에서 제정되었다.

구분	제정(광역·기초)	제정	전체
서울	서울시, 성북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영등포구,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양천구, 은평구, 강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15	26
부산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중구, 사상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연제구, 기장군	11	26
대구	대구시, 달서구, 중구, 동구	4	9
인천	인천시, 남구	2	11

구분	제정(광역·기초)	제정	전체
광주	광주시, 서구, 남구, 동구, 북구, 광산구,	6	6
대전	대전시, 서구, 대덕구, 동구, 중구	5	6
울산	울산시, 동구, 북구, 남구, 중구, 울주군	6	6
세종	세종시	1	1
경기	경기도, 광명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의정부시, 김포시, 오산시, 광주시, 구리시	11	32
강원	강원도, 원주시, 영월군	3	19
충북	충청북도, 증평군	2	12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부여군, 아산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금산군, 공주시, 예산군, 계룡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서천군	16	16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4	15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완도군, 보성군, 나주시	6	23
경북	경상북도, 문경시, 고령군, 구미시	4	24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고성군, 함양군, 사천시, 거제시, 창원시	7	19
제주	제주도	1	1
계		104	252

2)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및 정책 현황

① 인권전담부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레짐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권조례의 제정이며, 이를 근거로 인권전담기구의 설치와 인권정책수립 및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인권행정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전담부서 설치와 인권침해구제 등은 매우 부족하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인권기본계획’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담부서의 신설과 전문적인 역량의 강화가 중요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인권전담부서로서 인권담당관실, 인권팀, 인권센터의 설치과 인권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전담부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헌법과 국제법에 의거해서 부여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실행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한 조직과 예산을 투여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와 같이 인권침해사안까지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현재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경북, 세종시 등 단 2곳에 불과하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권전담부서의 설치는 서울 성북구, 은평구, 동작구, 광주 광산구,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정도이며, 인권침해구제제도의 시행 역시 서울 성북구, 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수원시, 광명시 등 일부에서만 운용되고 있다.

표1.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전담부서 설치현황²⁾

1	서울	18명	서울혁신 기획관	인권담당관(4)	인권정책팀(4)	인권보호팀(3)	인권협력팀(4)	시민인권 보호관(3)
2	광주	15명	인권평화 협력관	인권평화 협력관(1)	인권 옴부즈맨(1)	인권정책담당(6) 여성인권보호관(1)	인권평화교류(4)	옴부즈맨 지원(2)
3	대구	5명	자치 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증진팀(3)	감사관실 인권옴부즈맨(1)	옴부즈맨지원(1)	
4	제주	4명	특별자치 행정국	자치행정국	시민 참여인권(4)			
5	대전	3명	자치 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담당(2)	시민인권보호관(1)		
6	강원	3명	총무 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3)			
7	경기	6명	자치 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 보장팀(3)	인권센터(3)		
8	충북	4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3)	인권보호관(1)		

2) 2019년 1월 현재

9	충남	6명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 증진팀(3)	인권센터(3)		
10	전북	9명	인권센터	인권교육 팀장(4)	인권 보호팀장(2)	장애인인권팀장 (3)		
11	전남	3명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 인권팀장(2)	인권옴부즈맨(1)		
12	부산	10명	행정 자치국	인권노동 정책과				
13	인천	3명	혁신 담당관실	시민인권 담당(3)				
14	울산	3명	행정 지원국	시민소통 협력과	인권공동체 (4)			
15	경남	3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보호 담당(3)			
16	경북		미설치					
17	세종		미설치					

표2.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권전담부서 설치현황³⁾

1	서울	성북구	3명	감사담당관	인권센터(3)	
2	서울	은평구	3명	감사담당관	인권센터(3)	
3	서울	영등포구	3명	감사담당관	인권센터(3)	
4	서울	서대문구	3명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인권팀(3)
5	서울	동작구	2명	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2)	
6	서울	노원구	3명	감사담당관	인권청렴팀(3)	
7	서울	도봉구	4명	감사담당관	청렴인권팀(4)	
8	서울	구로구	4명	감사담당관	청렴인권팀(4)	
9	서울	강북구	3명	감사담당관	청렴인권팀(3)	
10	서울	성동구	4명	감사담당관	인권팀(4)	
11	광주	동구	2명	자치행정국	인권청년과(2)	

3) 2018년 12월 현재

12	광주	남구	3명	감사담당관	인권민원팀(3)	
13	광주	북구	5명	자치행정국	인권교육과	인권정책팀(5)
14	광주	서구	3명	총무국	총무과	인권단체(3)
15	광주	광산구	3명	감사관	인권팀(3)	
16	경기도	수원시	7명	감사관	인권팀(3)	인권센터(4)
17	경기도	광명시	2명	감사실	시민인권팀(2)	
18	경기도	고양시	7명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	평화인권도시팀(7)
19	경기도	성남시	4명	행정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인권보장팀(4)
20	전라북도	전주시	5명	감사담당관	인권센터(5)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3명	감사실	인권센터	

인권침해구제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는 서울시와 광주시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 결과 시 소속기관과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상담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등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7인 합의제 형태의 인권옴부즈맨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인권침해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표3.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침해구제 제도 설치현황

지역	인원	인권침해구제제도
서울	상임 3명(계약직 공무원)	시민인권보호관
광주	상임 1명(계약직 공무원), 비상임 6명, 7인합의제	인권옴부즈맨
대전	상임 1명, 비상임 6명	시민인권보호관
대구	상임 1명	인권보호관
충북	상임 1명, 비상임 6명	시민인권보호관
충남	상임 2명	인권보호관
강원	상임 1명, 비상임 6명	인권보호관
전남	상임 1명	인권보호관

② 인권기본계획

인권기본계획 수립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과 인 권교육, 인권문화의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의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인권행정을 시작하고 있다. 인권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4곳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현재 20곳에 불과하다.

표4.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계획 수립현황

지역	시행기간	인권기본계획
서울	2013~2017	인권기본계획(2013)
부산	2015~2019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14)
광주	1기(2012~2016) 2기(2017~2021)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2011)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2017)
대전	2016~2020	대전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
울산	2016~2020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15)
대구	2018~2022	대구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18)
세종	2016~2020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15)
강원	2015~2019	강원도 인권증진 기본계획(2015)
충북	2016~2020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2016)
충남	2015~2019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4)
전북	2017~2021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16)
전남	2016~2020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15)
제주	2017~2019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17)

대부분의 ‘인권기본계획’에는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인권 행정의 안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정부나, 조직, 기업들이 중

더 인권에 책임을 가지고, 인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 조직 기업들의 계획과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인권영향평가를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법령을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기 때문에 국민이나 시민을 위한 행정과 예산 낭비를 방지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성북구의 사례에서 보이듯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 전담인력 및 시스템 구축, 공무원의 인권교육 등이 필요하다. 인권영향평가는 '행정의 인권화'를 위해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다.

2.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과제

(1) 인권전담기구

인권기본조례 실효적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업무를 담당할 독립적인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의 설치이다.

인권기본조례를 통해 마련될 인권기본계획의 시행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사무를 밝히고 집행할 전담부서의 존재는 인권의 현실적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위치를 점한다. 인권기본조례를 통해 마련하는 '인권기본계획'의 시행은 담당 부서가 아닌 전 청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지방자치단체 '인권사무' 이행을 위해선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업무의 조절과 평가를 이끌어갈 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계획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현재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위원회의 회의 연락 정도의 부수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어서, 현실적으로 조례는 있으나 시행을 책임질 부서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인권조례의 시행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인권전담 사무조직이 꾸려져 있는 경우에도 전담부서가 고립되지 않게 운영되어야 한다. 인권행정의 특성상 정책이 전 청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인권전담부서

와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부서별 인권담당자를 선정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조례의 내용강화

인권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인권영향평가 도입

인권에 기반한 행정, ‘인권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human rights)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적 이행기제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안에서 제안된 ‘인권영향평가’ 조문을 도입하여 행정의 전반에 인권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나 조례의 관할권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서울 성북구의 사례에서 보듯, 인권영향평가 도입, 적용의 방식을 구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행정에 적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

‘인권기본조례’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규칙도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기술한 전담부서 설치와 인권(증진)위원회의 권한강화, 인권영향평가 도입과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인권에 기반한 행정, ‘인권의 주류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한다.

(3) 인권거버넌스

인권위원회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의 인권화를 견인할 동력은 만들어지기 어렵다. 또한 심의자문 기능에 한정된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대한 인권적 감시기능, 인권기본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이

행을 점검하는 것, 지역에 발생하는 인권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역시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현재 조례내용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 ‘인권(증진)위원회’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열악한 인권역량을 감안할 때 민관이 함께 ‘인권정책’을 마련해가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다. 인권사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함께 지역사회의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광주광역시 사례를 보면, 인권단체, 대학교, 지역연구기관, 의원, 시의 담당부서 책임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민관인권정책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여 ‘인권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중요한 것은 인권거버넌스를 이해하는 행정의 태도이다. 인권거버넌스는 단순히 시민을 행사 참여대상자가 아니라, 정보공개 수준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심의하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참여, 시민참여를 논하고 인권거버넌스를 지향한다면, 이는 단순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과 같은 주민참여형 행사 기획이 아니라, 인권정책의 기획-수립-추진-평가의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⁴⁾ 정책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이 절실하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이후 ‘인권기본조례’가 확산되었으며, 인권도시, 인권행정이라는 과제를 풀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사무’는 여전히 낯선 업무이다. 그동안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선도적으로 ‘인권기본계획’이니 ‘인권지표’이니 실험적인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지만 선뜻 다가서질 못하고 있다.

현재 인권조례 담당자들의 요구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사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만 최소한 어떠한 일들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다시말해 일종의 ‘2기 인권조례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홍성수 교수의 의견처럼 1기가 조례의 제정을 통해 물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규범을 만드는데 집중했다면,

4) 오미숙, ‘인권도시 성북의 주민참여 사례’, 제5회인권도시포럼 자료집, 한국인권재단, 2013, 22-23p

이제 2기는 인권기본조례가 각 지방 주민들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에 기반한 행정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 요구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답해야 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강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국가의 인권실현책무를 중앙정부와 더불어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체계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인권행정을 펼쳐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 간의 조직적 관계는 아직 설정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지자체 인권행정의 성장과 향후 그 필요성을 감안할 때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지자체 인권기구와의 소통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와 인권도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지자체인권보호관 협의회(가칭)도 구성되어 활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 기구간 긴밀한 협의가 절실히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인권제도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권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에 있어서 「인권기본조례」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질문은 상위법의 위임과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침의 유무이다. 철저하게 중앙집중적인 권력구조의 한국 지방자치에서 「인권기본조례」를 강제할 상위법이 없이 인권전담부서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 인권사무의 추진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단체장의 판단에 근거한 인권제도화는 제자리걸음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기본법」의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 「인권기본법」의 내용에 지자체 인권책무를 구체화하고 인권기구의 설치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시민사회의 역할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은 지역 인권레짐의 구축이 단체장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허약한 구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 찾아볼 수 있다. 인권기본법도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의 근거로 작동할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행정은 상부기관의 지침과 법령을 토대로 구성되기에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행정행위 자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힘들다. 헌법가치를 원칙적으로 인용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인권행정의 수행 주체들인 담당 공무원들이 스스로 인권정책을 수행할 만큼의 역량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행정의 확산은 매우 힘든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또한 지역사회의 열악한 인권 인프라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인권행정의 안정적 시행을 주장하지만,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일부지역의 경우 인권전문성을 담지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지역의 척박한 인권인프라, 관련법령의 미비, 행정 담당공무원들의 부족한 인권역량, 인권행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부족 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유일한 동력은 결국 단체장의 의지에 기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권행정의 원칙을 견지하며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모범 사례를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지점이 있다. 첫째, 담당부서에는 반드시 인권감수성을 담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있다는 점이다. 둘째, 민관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참여'와 '비판'이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행정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필수조건이다. 행정내부의 자력으로 민관 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초기 인권행정의 기초를 닦는 과정에서 참여를 통한 견인이 중요한 이유다. 더불어 지역사회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책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단체장 의존성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인권행정의 시작을 여는 유일한 방안이다. 지역 인권레짐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최근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최의 인권관련 행사들을 참석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인권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지자체 행사가 여전히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인권’이라는 외피만을 걸친 채 행해지곤 한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설득해보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처해있는 난처한 상황을 그저 모른 척 할 수 없을 때도 많다.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의 민낯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정책과 행정에서 제도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매우 의미 있다. 개발과 성장 속에서 배제되어왔던 이들,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권리를 박탈당해왔던 사람들을 권리의 주인으로 세워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자양분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실현하는 지방정부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기대한다.



인권도시 발전과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토론회

[발표 2]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의 협력 방향

박유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주무관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의 협력 방향

박유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주무관

■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 행정 확산 노력

- 2012. 4. 1.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숍
- **2012. 4. 12.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 2013. 10. 23.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방향 모색 워크숍
- 2017. 6. 8.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
- **2017. 6. 15.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의 건**
- 2018. 1. 25.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반대 의견표명
- 2018. 12. 12-14. 인권옹호자 회의 개최
- 2019. 4. ~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 (연구용역)
- 2019. 6. 20-21.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담당자 워크숍
- 각 지역사무소 별 관할 지자체와의 인권 행정 협의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업무 관련 현안

분야	세부 내용	현 안
제도	• 인권조례	• 인권위는 이제까지 조례 확산에 초점을 맞췄으나 조례만 만들고 실제 인권행정은 하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 • 인권조례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권리구제방안	• 지방자치단체 업무 권한 내 인권 권리구제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 왔음
정책	• 기본계획 • 실태조사 • 영향평가	• 인권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임. • 인권 관점이 지방자치단체 모든 행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내실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교육	• 공무원 • 시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인권조례가 없거나 조례 제정 후 별다른 활동이 없는 곳에서도 그나마 추진하는 것이 인권교육임 •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문화 조성이 가능한 바, 이 부분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원이 필요함
협력	• 시민 대상 사업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 • 정보공유 등을 통해 자력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협력

■ 국가인권위원회,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

부서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인권 정책과	• 인권 조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19년 인권조례 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문, 공동 간담회 개최 • 제기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조례안의 개선 필요 검토
	•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업무 가이드 마련	•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기본계획,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 추진 시 수립 절차, 유의할 사항,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후속 조치 등 포함 • 지자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용역 진행 중
홍보 협력과	• 지방인권기구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 ↳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 인권네트워크 홈페이지 운영	• 매년 한 차례 인권옹호자회의 개최(2019. 8. 28.~30.) -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인권센터 등 위탁기관, 지자체 인권위원회 관계자 등 참가 - 전국적 교류, 인권행정 경험 공유 등 • 인권위 및 지자체 간 자료 공유를 위한 인권네트워크(www.humanrightstogether.com) 개설, 7월 초까지 기초 자료 업로드
인권교육 기획과	• 인권행정 담당자 역량강화	• 광역 시도 지자체 인권교육 협의회 운영 •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 • 지자체 조사구제업무 담당자 워크숍
지역인권 사무소	• 지역단위 상시적 협력	• 지역별, 지자체별 인권옹호자 워크숍 등 진행



인권도시 발전과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토론회

부 록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 2012-02-22 조례 제 4731호
 (일부개정) 2013-07-10 조례 제 4881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03-19 조례 제 5003호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 507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 5081호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02-25 조례 제 509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08-01 조례 제 57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01-01 조례 제 5832호
 (일부개정) 2019-01-09 조례 제 584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란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시민 스스로 도시 구성원으로 서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 1]

제2조의2(기본원칙) 시민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하며,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

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② 시가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 1]

제4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
2. 여성, 아동, 노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19〉

제4조의2(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및 구·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구·군 또는 관련 기관에 개선 또는 자치법규·지침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19]

제5조(인권위원회의 설치<개정 2019. 1.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3. 19, 2019. 1. 1>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 3. 19>
2. 인권 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1>
5. 시민 인권현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1>
6. 그 밖에 인권의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1, 2019. 1. 9>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인권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9. 1. 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1. 1>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9. 1. 1>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 3. 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 권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9. 1. 1>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2(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등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4조(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상담 및 관련 자료 수집 활동
2.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감독에 참여
4.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6.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14. 3. 19>

제14조의2(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인권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2. 시에서 추진하는 인권 관련 시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3.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인권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시장은 모니터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4조의3(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4조의4(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외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권과 관련한 기관·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인권을 고려한 경영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에게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019. 1. 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 교육 및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발굴 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

④ 시장은 학생에 대한 인권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권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14. 3. 19>

제1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 및 증진

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16) ~ (32) 생략

부칙〈2014. 3. 1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 안전행정국장, 복지건강국장”을 “여성가족관, 기획행정관,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17) ~ (100)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1)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22) ~ (56) 생략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관, 기획행정관, 사회복지국장”을 “기획행정관, 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④ ~ (26) 생략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관, 사회복지국장”을 “시민행복추진본부장,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⑫ ~ (95) 생략

부칙<2019. 1.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② ~ (73) 생략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제정) 2010-03-25 조례 제 3497호

(일부개정) 2013-12-12 조례 제 3866호

(일부개정) 2014-10-10 조례 제 3930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5-10-29 조례 제 4069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7-08-03 조례 제 43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12.12>
2. “다수인보호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인권 약자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12.12.>
 - 가. 아동복지시설
 - 나. 장애인복지시설
 - 다. 정신보건시설
 - 라. 노숙인복지시설
 - 마.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바.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 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 “인권 약자”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 집단 또는 다수인보호기관에 수용되어 있거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12>

4. “도민”이란 도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또는 도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1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민과 도내에 있는 다수인보호기관, 각종 시설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12.12>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다수인보호기관의 인권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5.10.29.>

② 도지사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9조의 경상남도 인권센터가 조사하게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4.10.10>

제5조(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도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①삭제 <2017.8.3.>

②삭제 <2017.8.3.>

③삭제 <2017.8.3.>

제6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인권 교육은 도 소속 공무원이나 출자·출연기관 직원, 다수인보호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삭제 <2013.12.12>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목표와 세부 추진계획 <개정 2013.12.12.>

2. 인권 의식의 함양 및 실천을 위한 인권 교육 및 홍보 <개정 2013.12.12.>

3. 인권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 계획 <개정 2013.12.12>
4. 다수인보호기관의 인권 침해 방지 및 구제 방안 <신설 2013.12.12>
5.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 방안 <신설 2013.12.12>
6. 그 밖에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2>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12>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2. 제19조에 따른 경상남도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2, 2014.10.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12.12>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13.12.12, 2015.10.29.>
2. 법학 또는 인권관련 전공 교수 <개정 2013.12.12>
3. 변호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3.12.12>
4. 인권관련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2.12>
5. 그 밖에 인권관련 업무에 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2.12>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12.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2.12>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3.12.12>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개정 2013.12.12>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12.12>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12.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10.10>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경상남도 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의 집행
2.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 교육 및 홍보활동
3. 인권 침해 실태조사
4. 인권 침해 피해자 지원

5. 그 밖에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

③ 도지사는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인권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12〉

제20조(관련 기관 협조 등) ① 인권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인권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2〉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2〉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0-11 조례 제 1307호

(일부개정) 2015-06-30 조례 제 1527호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시민의 인권보호와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정책”이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조례 등의 연구와 계획의 수립과 집행,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시책·방침 등을 말한다.
3. “시민”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보호와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형사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기본적 인권) 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시민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모든 시민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실시)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의 인권정책에 관한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5. 그 밖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자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자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자

④ 위원은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도 있다.

⑤ 위원 중 3분의 1이상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제11조(분과의 설치·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실비보상, 운영비)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 공무원 및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인권센터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인권센터의 재정)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시장은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의 시기) 이 조례 제8조가 규정하는 울산광역시인권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인권도시 발전과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토론회

| 인 쇄 | 2019년 7월 10일

| 발 행 | 2019년 7월 10일

| 발행인 |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주 소 |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회관 8층

| 전 화 | (051) 710-9720 | F A X | (051) 710-97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688-3 9335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